

도서관 폐관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0일
도서관의 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도서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작은도서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도서관 <input type="checkbox"/> 병원도서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도소도서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어린이도서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도서관		
등록번호	제	호	등록년월일
설립자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
명칭			
소재지			전화번호
사유	폐업일		

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

「도서관법」 제31조제3항, 제40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

※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.

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

사업자	도서관명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사업장 소재지	전화번호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※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

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.

첨부서류	1. 도서관 등록증 원본 ※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사업자등록증 원본(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사업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(포괄 양도·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작성방법

설립자가 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.

유의사항

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·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